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했다. 또한 보복조치,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점수를 부과한 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외에 시행령 '별표 3. 벌점 부과기준'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추가했다.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국회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국회 정무위에서는 원·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단가 조정협의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가격 조사,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정부와 재계, 중소기업계 등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3월 중 대통령 공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폐지 등 지주회사 관련 법 개정사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이뤘다. 출총제 폐지와 동시에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총제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과 기업결합 사전 신고기한 폐지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 방지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이를 위해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시장상황 조사·분석을 위한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조정협약제’가 도입될 경우 대·중소기업간 납품가를 둘러싼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서면계약서 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전경련 등과 함께 ‘구두발주 근절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쟁제한규제 신설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신설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고, OECD 모델을 기초로 개발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각 부처에 보급해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을 예방하는 등 경쟁제한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온라인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하고 그 방법도 더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의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 가능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확인 온라인 처리 가능 △ 통신 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처럼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법상 '미란다 원칙'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천명한 것으로, 조사 직전 피조사업체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으로,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공정·투명·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는 당일 조사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공정위가 미란다 원칙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 보장 및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과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조사 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하여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는데,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지만 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만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비밀을 엄수해야만 한다.

□ KT, 삼성물산, LG전자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대기업 중 최초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KT, 삼성물산, LG전자를 대상으로 협약기간 1년 간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자단체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협약내용의 충실도와 이행정도 등을 평가한 이번 결과에서 평가결과 3개 기업 모두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았다.

3사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영했고, 납품단가 조정절차 등을 내부규정과 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했으며 협력사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협약에 따른 자금지원 및 납품단가 인상으로 약 5,043억 원의 협력사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 다수 발굴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자금지원 1,300억 원, 납품대금 인상 434억 원, 자재비용 절감 700억 원 등을 지원했으며, 철판 등 가격 상승이 큰 원자재를 일괄구매·공급하여 120개 협력사의 자재비용을 700억 원 절감하고, 31개 협력사에 전문인력 34명을 파견해 협력사의 기술 및 경영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KT는 자금지원 2,201억 원과 납품대금 인상 86억 원 등을 지원했으며, 업계 최초로 전문지식 및 자금이 부족한 2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경영지원 전담부서를 신설 품질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휴대인터넷 ICS 중계기 개발 등 6개 과제에 대해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자금지원 37억 원과 납품대금 인상 28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과제를 공모·발굴해 이를 제안한 9개사 11개 과제에 대해 기술 개발자금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미경험 공종작업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협력사에게 계약금액 7억 원을 인상 조정해 경영 정상화 유도 및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LG전자나 삼성물산의 기술자료임치제 등 기술보호 관련사항 미 규정과 납품단가 조정요건을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별도 약정에 위임하는 사례 등 협약내용에 기술보호 관련사항이 없거나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사례 등은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공정위·방통위, 불공정행위 중복규제 방지 위한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5일 오후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 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과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을 비롯해 담당 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한 결과, 지난해 말 양 기관 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체결한 합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와 사업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 단장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간사는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과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으로 구성 △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 선정 △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 선정과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전담하는 것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와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공정위, 엄격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윤리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이 추진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자가 직무 관련자에 해당될 때는 접촉을 제한하고, 퇴직예정공무원으로부터 퇴직 후 관련 업무를 회피하고 사적인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던 공정위는, 이에 더해 모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간소한 식사도 금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로펌 등 소속의 직무관련자와 골프·식사 등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했다.

즉, 공정위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적인 접촉'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식사·여행 등을 하는 것과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할지라도 직무 관련자와는 간소한 식사도 금지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1인당 3만 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인당 3만 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도 금지한 것.

공정위는 개정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간소한 식사접대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3년, 2회 6년)하고 국별 근무성적 평정시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로 평정하게 했으며, 금품수수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6년, 2회 영구)하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 아웃제'를 시행(1회 2년, 2회 영구)하게 된다.

또한, 부서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부서장 조직성과 달성도를 일정비율로 감점해 부서장의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 양식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 7일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해 오는 2월부터 활용하게 된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 3개 항목과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 4개 항목을 1개 양식으로 통합한 것.

한편, 2008년 공시점검 결과 정기공시의 누락공시 건이 총 13건이 발생했는데, 공정위는 이번에 정기공시 양식 2개를 1개로 통합함에 따라 누락공시 등 법위반 행위 방지와 공시양식의 개선을 통해 쉽고 편리한 공시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 공정경쟁 막는 규제 63개 신설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 간(2006~2008년) 경쟁제한적 법령협업체도를 통해 총 63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관련부처에 제시,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06년 20건, 2007년 25건, 2008년 18건을 각각 개선 조치했다. 규제유형 별로는 진입제한 13건(20.6%), 사업활동 제한 10건(15.9%), 가격제한 5건(7.9%), 소비자보호 저해 15건(23.8%), 중복규제 14건(22.2%), 부당공동행위 우려 4건(6.3%), 기타 2건(3.2%) 등이다.

규제 개선의 주요 특징으로는 협의건수 측면에서 2008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해 72%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규제유형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 저해와 관련된 규제의 신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의 규제유형별 주요 법령협약 사례를 살펴보면 △ 전시회의 인증업무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독점위탁(지식경제부, 전시산업 발전법 시행령)한 진입 제한 △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법령으로 지정(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한 가격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해 제공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 보호 저해 △ '행정사협회'를 설립하면서 회원의 강제가입 의무를 규정(행정안전부, 행정사법)한 사업 활동 방해 및 공동행위 우려 △ 보험상품 광고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부당한 비교광고 내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중복규제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 경제 각 분야에 시장경쟁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법령협약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한번 도입된 경쟁제한적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보다는 사전에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면밀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합리적인 대안 모색과 관계부처에 제시하는 등 경쟁주창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2개 업종 제정·14개 업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2개 용역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는 한편,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1월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14개 업종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등이다.

2005년 7월부터 용역업종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매년 2개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빈번한 화물취급업·건축물유지관리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게 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으며,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장했다. 또한,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되며, 계약의 중요내용 위반시 2주 이상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가는 상호 합리적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에 소급 정산하게 된다.

작년 9월 29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서면 계약서에 기재토록 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건설업종, 제조업종 등 납품단가조정이 필요한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않은 경우에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즉, 계약 체결 후 90일(60일) 이후 총 계약금액의 3/100(제조업은 5/100) 또는 비중 1/100(제조업은 5/100) 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100 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제조업은 납품물량)에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가 1987년부터 총 2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해 하도급 첫 단계에서부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 법 위반행위로 조치될 경우 '벌점 2점 감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2009년 2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09년 3월 2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40개 집단 1,044개로, 2009년 2월 2일 현재 40개 집단 1,049개에서 편입 2개와 제외 7개를 포함해 5개가 감소했다.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9년 3월 2일 현재 618개로, 2009년 2월 2일의 619개에서 1개(편입 1개, 제외 2개)가 감소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9년 3월 2일 현재 26개 집단 426개로, 2009년 2월 2일의 26개 집단 430개에서 편입 1개, 제외 5개를 포함해 4개가 감소했다.

증가내역은 ▲ 회사 설립 1개[삼성 : 삼성디지털이미징(주)] ▲ 지분 취득 1개[엘에스 : (주)플레넷]로 총 2개였다.

감소내역은 ▲ 합병 6개[지에스 : (주)유정운수 /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개발(주), 코레일전기(주), 코레일엔지니어링(주) / 효성 : 스타리스(주) / 현대백화점 : (주)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 청산 종결 1개[지에스 : (주)에스엠]로 총 7개다.

〈 2009년 2월 중 계열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 집단	2009. 2. 2.	편 입				제 외						총 감	2009. 3. 2.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 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 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4개)	619	1	-	-	1	1	-	1	-	-	-	2	-1	618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40개)	1,049	1	1	-	2	6	-	1	-	-	-	7	-5	1,044

■ 변동내용

가. 편입 : 2개사(회사 설립 : 1, 지분 취득 : 1)

나. 제외 : 7개사(합병 : 6, 청산 종결 : 1)

□ 2009년 1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2009년 2월 2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40개 집단 1,049개로, 2009년 1월 2일 현재 40개 집단 1,050개에서 1개(편입 15개, 제외 16개)가 감소했다.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9년 2월 2일 현재 620개로, 2009년 1월 2일의 620개와 동일(편입 11개, 제외 11개)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9년 2월 2일 현재 26개 집단 429개로, 2009년 1월 2일의 26개 집단 430개에서 1개(편입 4개, 제외 5개) 감소했다.

증가내역은 ▲ 회사 설립 9개[현대자동차 :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주), (주)서림환경기술, 그린에어(주) / 롯데 : 씨에이치음료(주), (주)롯데주류비지 / 포스코 : 유니버셜스튜디오리조트개발(주), 유니버셜스튜디오리조트자산관리(주) / 두산 : 두산디에스티(주) /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상조(주)] ▲ 지분 취득 6개[현대자동차 : 서림개발(주) / 지에스 : (주)그린센츄리, (주)유정운수 / 현대중공업 : (주)호텔현대, (주)호텔현대경포대 / 대우조선해양 : (주)아유디자인컨설팅트종합건축사사무소]로 총 15개다.

감소내역으로는 ▲ 합병 9개[에스케이 : (주)울릉심총수 / 롯데 : (주)롯데대산유화 / 금호아시아나 : 한국도로관리(주) / 한화 : 한국메디텍제약(주) / 에스티엑스 : 에스티엑스산업플랜트(주) / 신세계 : (주)신세계마트 / 씨제이 : (주)개금유선방송 / 동부 : (주)비에스휴먼텍 / 현대백화점 : (주)대구중앙케이블티브 북부방송] ▲ 지분 매각 3개[대한전선 : (주)케이아이파트너스 / 현대백화점 : (주)호텔현대, (주)호텔현대경포대] ▲ 청산 종결 2개[금호아시아나 : 대한용역(주), 케이이정보기술(주)] ▲ 기타 2개[현대자동차 : (주)코렌텍 / 금호아시아나 : 푸른한강타운(주)]로 총 16개다.

〈 2009년 1월 중 계열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09. 2. 2.	편입				제외							증감	2009. 3. 2.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 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 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4개)	619	1	-	-	1	1	-	1	-	-	-	2	-1	618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40개)	1,049	1	1	-	2	6	-	1	-	-	-	7	-5	1,044

■ 변동내용

가. 편입 : 15개사(회사 설립 9, 지분 취득 6)

나. 제외 : 16개사(합병 9, 지분 매각 3, 청산 종결 2, 기타 2)

□ 공정위 인사 동향

2009. 1. 2.

- ① **카르텔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 행정주사 변동영**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1.2~별도 발령 시까지).
-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노용환**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1.2~별도 발령 시까지).
- ③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김영식**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실 : 2009.1.2~별도 발령 시까지).
- ④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김양수**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실 : 2009.1.2~별도 발령 시까지).

1. 3.

- 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유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 연장을 명함(기간 : 2009.1.3.~2009.7.2.).

1. 5.

- ①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장 서기관 박태동**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4호(특별승진)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명예퇴직)에 따라 그 직을 면함.
- ②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장 서기관 박도하**
- ③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문상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④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사무관 이준형**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1.5.~별도 발령 시까지).
- ⑤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사균**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1.5.~별도 발령 시까지).
- ⑥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준현**
복직을 명함. 카르텔정책국 국제카르텔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1.5~별도 발령 시까지).

1. 6.

- 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김창훈**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1.6.~ 별도 발령 시까지).
- ②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 나경복**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③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양기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④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손영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이호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⑥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박재생**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⑦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보 박진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⑧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보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1. 8.

- ① **7급 전산직 채용후보자 김태훈**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 2009.1.8.~별도 발령 시까지).
- ②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강나리**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카르텔정책국 서비스카르텔과 : 2009.1.8.~별도 발령 시까지).
- ③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박준영**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 2009.1.8.~별도 발령 시까지).
- ④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민지현**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 2009.1.8~별도 발령 시까지).
- ⑤ **7급 행정직 채용후보자 최 호**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 2009.1.8.~별도 발령 시까지).
- ⑥ **7급 토목직 채용후보자 장재혁**
시보임용전 수습을 명함(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2009.1.8.~별도 발령 시까지).

1. 16.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기업협력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포함. (대통령)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통령)
-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영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포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구**
파견복귀를 명함. 소비자정책국장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에 포함.
- **시장감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에 포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희상**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1. 19.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임경환**
복직을 명함.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 근무를 명함.

1. 20.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직업단장 부이사관 최정열**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

1. 21.

- **경쟁제한규제개혁직업단 행정주사보(시보) 신두식**
행정주사보에 임함.

1. 23.

-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김석호**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신영선**
부이사관에 임함.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 김학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2. 4.

- **대변인실 부이사관 지철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카르텔정책국장에 포함. (대통령)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 행정사무관 강상석**
경쟁제한규제개혁직업단 근무를 명함.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사무관 이원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에 포함.

[국장급]

-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대변인 직무대리를 명함 (기간 : 2009.2.4.~별도 발령 시까지).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 직무대리를 명함(기간 : 2009.2.4.~별도 발령 시까지).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부이사관 유재은**
파견복귀를 명함. 경쟁제한규제개혁직업단장에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을 명함 (기간 : 2009.2.11.~ 2010.2.10.).

[과장급]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순종**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부이사관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정책과장 부이사관 장득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방대학교 교육파견을 명함(기간 : 2009.2.9.~2010.2.8.).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서기관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외교안보연구원 교육파견을 명함(기간 : 2009.2.20.~2010.2.19.)
- **카르텔정책국 제조카르텔과장 서기관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세종연구소 교육파견을 명함(기간 : 2009.2.9.~2010.2.8.)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기업집단과 서기관 남동일**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 포함.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장 서기관 김윤수**
감사담당관에 포함.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 서기관 배진철**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에 포함. 심판관리관 직무

- 대리를 명함(기간 : 2009.2.4.~별도 발령 시까지).
- ◎ **카드텔정책국 카드텔정책과 서기관 최영근**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에 보함.
 - ◎ **카드텔정책국 카드텔정책과장 서기관 김재중**
운영지원과장에 보함.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이영일**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에 보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서기관 김중선**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에 보함. 기획조정관 직무대리를 명함(기간 : 2009.2.4.~별도 발령 시까지).
 - ◎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 서기관 이용수**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에 보함.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서기관 박인규**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부담담당관에 보함.
 -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서기관 홍용수**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에 보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장 서기관 김성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노상섭**
경쟁정책국 경제분석과장에 보함.
 -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부담담당관 서기관 김성삼**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분석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김만환**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조사과장에 보함.
 -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분석과장 서기관 곽세봉**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홍대원**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과장에 보함.
 -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조홍선**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장에 보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서기관 김호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에 보함.
 - ◎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장 부이사관 김준범**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정책과장에 보함.
 - ◎ **경쟁정책국 경제분석과장 서기관 송상민**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장에 보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서기관 정진욱**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장에 보함.
 - ◎ **카드텔정책국 서비스카드텔과장 서기관 채규하**
카드텔정책국 카드텔정책과장에 보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장 서기관 황정곤**
카드텔정책국 제조카드텔과장에 보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과장 서기관 최무진**
카드텔정책국 서비스카드텔과장에 보함.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서기관 장덕진**
파견복귀를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조근익**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장에 보함.
-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장 서기관 정정길**
파견복귀를 명함. 기업협력국 종합상담과장에 보함.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기관 임은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에 보함.
- ◎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 서기관 이유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에 보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박원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에 보함.
- ◎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 서기관 권영익**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보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서기관 박종성**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1부단장에 보함.
- ◎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시장분석과 서기관 인민호**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부단장에 보함.
-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4급 상당 구성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 6.

- ◎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 행정사무관 최장관**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행정사무관 임덕용**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전재웅**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2.6.~별도 발령 시까지).
- ◎ **운영지원과 서기관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기흥**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김현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2.6.~별도 발령 시까지).
- ◎ **시장감시국 기간산업경쟁과 행정사무관 박중배**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경숙**
경쟁정책국 시장분석정책관실 기업집단과 근무를 명함.
 - ◎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조규찬**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황윤환**
시장감시국 기간산업경쟁과 근무를 명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2.6.~별도 발령 시까지).
 - ◎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맹규**
기업협력과 하도급정책과 근무를 명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김시문**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 : 2009.2.6.~별도 발령 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정금섭**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근무를 명함.
 - ◎ **한윤숙**
행정주사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2.6.~별도 발령 시까지).

2. 9.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순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대통령)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순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파견 근무를 명함
(파견기간 : 2009.2.9.~2009.12.31.).
- ◎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파견 근무를 명함(파견기간 : 2009.2.9.~2009.12.31.).

2. 16.

-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김석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에 보함. (대통령)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손홍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 문창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행정주사 최현록**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기능8급(사무원) 김현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사무원) 나애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2. 17.

- ◎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김재중**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종선**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장 서기관 김성하**
부이사관에 임함.
- ◎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유중곤**
- ◎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장혜림**
- ◎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 행정사무관 최영수**
- ◎ **카드결제정책과 카드결제정책과 행정사무관 정희은**
- ◎ **기업협력과 하도급정책과 행정사무관 신동열**
서기관에 임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 조일성**
-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행정주사 정금섭**
행정사무관에 임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현수**
행정사무관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정책과 서기관 엄기섭**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승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 : 2009.2.17.~별도 발령 시까지).
- ◎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한철기**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유성**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전성복**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급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 2009.2.17.~2010.2.16.).

2. 19.

- ◎ **김용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지원근무를 명함.
- ◎ **노현재**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근무를 명함.